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2020년
통권 115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조진경*

【국문초록】

2020년 4월 30일 새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나누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던 법률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성착취 범죄의 발생이 결국 「아청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음과 그 과정에서 현장단체의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과 그 이유에 대해 들어가는 말에서 밝히고 있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성착취 사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착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징과 「아청법」 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주제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피해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 십대여성인권센터[1] 대표

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2020년 4월 30일 새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아청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1]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나누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던 법률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https://law.go.kr/lsInfoP.do?lsiSeq=218019&lsId=&efYd=202011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법제처 제공>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혼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연령도 만 18세부터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겠다는 결정을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처분'[2]을 한다는 그 이상한 법률이 역사상 폐기되었다는 말이다. 절대 개정될 것 같지 않던 법률이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해산을 위해 마무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필자는 며칠 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현실 감각 없이 보낸 것 같다.

필자는 성매매 분야에서만 거의 20년을 활동해왔다.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 비난 속에서 현장을 지켜오면서 필자가 만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십대때 성폭력, 성매매에 이용되기 시작했었다. 필자는 '이 피해자들의 십대 때 누군가가 그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었다면, 이 피해자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차별, 폭행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겨우 집으로부터 도망 나오지만, 결국 아동·청소년들의 몸을 성적으로 노리는 성착취자들로부터 성폭력,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겨우 우리 센터와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출상황에서 있을 곳과 먹을 것을 위해 성인들의 성매매 제안에 응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이라 하여 성인 성착취자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상황에서 우리 센터 역시 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소견서 하나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관에 부모가 직접 가야 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 혼자서는 신고조차 할 수 없

2)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는 상황 속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산업은 점점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 시장으로 끌어들여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강요, 사망, 살해, 감금, 에이즈감염 등으로 피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질 때까지 결코 그 범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였다. 필자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3]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 해마다 끊임없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 이용하는 범죄가 지속되었고[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우리

3) 물론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 기자회견,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공동고소고발 및 실태조사, 국제회의, 전시회, UN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사항 심의에 NGO 기관으로 참여,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령' 제정 촉구, 영상제작과 홍보물제작, 캠페인,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기관 및 사무국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나 번번히 수많은 반대와 무관심에 직면해야 했다.

4)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A양이 가출 한 후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소녀 4명에게 성매매 강요,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고, 특히 가해자 들 중 십대 소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A양의 죽음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해 소녀들이 A양과 같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구타와 협박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 중 한 소녀는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하는 등 모친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한 사실을 밝히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2015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성매수자가 스마트폰 채팅앱 '즐O'을 통해 14세 소녀를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수 한 후 소녀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1:1 성매매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알선범죄자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채팅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알선 범죄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동청소년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알선자 3인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 중 1인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다.
2016년/ 만 13세 지적 장애 '하은이'를 성매수하여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기로 결심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인 '하은이'는 엄마가 심심할 때 채팅하라고 알려준 채팅 앱 '친구 OOO'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후 성인 남성들에게 1주일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 어렵게 '하은이'를 찾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는 하은이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하였지만, 가까스로 찾은 6명의 가해자들은 강제나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수사되지 않았고, 성매매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가해자들을 항고하고 줄기차게 성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가해자들은 전부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2015년 동안 가해자 5인은 성매수로 처벌받았고, 이에 2016년 '하은이'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옴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더욱이 사건 초기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로 수사한 점이나 성매매 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 현행 법률인 아청법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2016년 알선자들에 의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여중생이 성매수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 된 사실이 2017년 밝혀진 사건이다. 회원

사회에서는 결국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 온 국민을 분노와 두려움으로 들끓게 만들었다. 이에 필자는 이글에서 다양한 성착취 사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착취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징과 「아청법」 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Ⅱ. 사례를 통해 본 성착취 범죄 피해의 다양한 형태[5][6]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2014년도 이후 우리센터를 찾아오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유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가출하여 생존을 위해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고위험군의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2015년도부터는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 소위 '조건만남'이라는 수법으로 성착취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하여 사진을 요구, 사진을 받은 후 돌변, 유포협박을 통

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채팅 앱의 특성으로 이 여중생을 성매수 한 남성들의 신상파악에 실패했고, 여중생을 성매수한 가해자들 중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2019년/ 세계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 공유,유통,판매 사이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한 '손정우'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사건: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유통 및 판매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해외 32개국과 공조수사 한 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손정우)으로 밝혀져 검거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결과, 검거된 337명의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N%EB%B2%88%EB%B0%A9_%EC%82%AC%EA%B1%B4

5) Ⅱ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젠더리뷰」 2020 가을호 Vol. 58호에 필자가 쓴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에서 인용하였다. 사례들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사례들이며 각 사례들은 당사자들에게 활용동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날짜, 지역 등이 가공되거나 삭제하였음을 밝힌다.

6) 끔찍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성착취 영상제작 강요 사례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소개하고 싶었으나, 동광이 아동복지전문연구지임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진경. 2020 .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젠더리뷰 가을호'에서 참고할 수 있다

해, 더 심각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다시 그것으로 협박하여 성폭력, 성매매로 이용하는 범죄 유형이 공식적인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범죄 유형을 마치 공식이라도 되는 듯 공유하였고, 신고하여[7] 겨우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하거나, 피해 아동·청소년과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동일한 수법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듯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1.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사례

초등학생 아영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채팅 어플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내려 깔고 채팅방에 입장하자 수많은 쪽지들이 도착하였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에 쪽지들을 열어봤지만 쪽지의 대부분은 용돈제공, 조건만남 요구였다. 단순 대화를 원하는 쪽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남성 A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A는 아영이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요구하였고, 별 생각 없이 아영이는 아이디를 보내주었다. 그 후 A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잠꾸러기~ㅋㅋㅋ",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A는 아영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A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보내며 아영이의 환심을 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아영이는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A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그러던 중 A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냐? 어디까지 가봤냐? 뽀뽀는 해봤냐?" 는 등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아영이는 대화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A는 끈질기게 아영이에게 쪽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심심해진 아영이는 결국 A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의 집요한 성적인 질문에 아영이는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와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7) 신고한다하여도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익명성,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 성착취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아동·청소년 스스로 제작, 제공하였다하여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소하기전에 잘 생각해보라고 하여 돌려보내는 등 수사 자체도 진행되지 않기 일쑤였다.

대화를 이어갔다. A는 아영이에게 자신과 한번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아영이는 성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겁이나 거절하였지만, A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 며 매달렸다. 아영이는 "나는 초등학생이다." 라고 했지만, A는 "나는 초등학생 따먹는 게 로망이다." 며 줄기차게 매달리며 졸랐다. A는 자신의 차안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아영이를 졸라댔고, 호기심과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주겠다." 며 A와 만나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날 A는 차안에서 아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아영이에게 애원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헤어졌다. 그 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나 오징어 등을 사주고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영이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A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잡힌 후 A가 50대 남성으로 2명의 성인 아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2. 다양한 유포·협박 사례[1)]

1) "나 컴퓨터 전공자인데 네가 누군지 알아"

메신저 A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영상 등을 주고받던 나영이에게 한 남성이 메세지를 보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나영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나 컴퓨터 전공자야. 너 개인정보를 털어서 이전에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 음란한 대화나 사진, 영상 같은 거 다 해킹해서 퍼뜨릴 거야. 막고 싶으면 나랑 영상통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성의 지속적인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아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영이는 자주 사용하던 메신저에서 갑작스럽게 모르는 남성에게 메세지를 받았다. 남성은 다영이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상금으로 많은 돈을 보내려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성기 사진을 보내주시고, 알몸이 보이도록 영상통화를 해주세요." 다영이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서,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성이 요구한 대로 따랐다. 그러나 남성은 사진과 영상 통화를 받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더해 메신저에 공개되어 있던 다영이의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계속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다영이는 남성의 협박과 성적인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 그러자 남성은 메신저의 여러 계정을 구매하여 다영이를 끈질기게 협박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다영이는 남성의 요구로 찍었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통화 내용이 퍼트려질 것 같다는 불안함과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오빠는 너를 이해해"

어느 날 어떤 남성이 SNS 친구 추가, 댓글 등을 통해 수영이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 남성은 수영이의 게시물들을 보고 수영이에게 "오빠가 담배 대신 사줄게." 하며 접근했다. 처음에는 수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다가온 남성은, "나도 청소년기에 너 같았다." "동생 같아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남성은 수영이와 친해지자 점점 태도가 돌변하여,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만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만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지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당사자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신고당할 두려움을 느낀 수영이는 학교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해당 사건은 학교전담경찰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4) "제 계정이 해킹 당했어요"

어느 날 자영이는 깜짝 놀랐다. 자영이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계정이 SNS에 있었던 것이다. 그 계정에서는 신던 스타킹이나 팬티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자영이는

1) 출처: https://teen-it.kr/for-teen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 에서 2020년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https://teen-it.kr/)을 개발하였다. '깨톡' 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되는 성착취의 위험성과 예방 안내, 앱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윤리와 앱 내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가이드이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성적인 계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본인인데 계정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계정 사용자는 계정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강요하며, 보내지 않을 시에는 계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자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5) 일탈계, "내가 도와줄게"

차영이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용자가 차영이에게 메세지를 보내왔다. "나는 벗은 몸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신고하고 있어. 너 계정도 신고할거야." 경찰에 신고 당할까봐 두려워진 차영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신고 당할 것 같다'라는 게시글을 새로 올렸다. 그러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했던 차영이는 댓글을 남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한 달 동안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 나온 몸 사진을 요구했다. 차영이는 신고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자신의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라고 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또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속은 것을 알게 된 차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6) "날 좋아한다면 너의 몸을 보여 줘"

"널 좋아해.", 하영이는 메신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리고 둘은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남성은 고백이 받아들여지자마자 바로 '섹스', '몸' 등에 대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하영이와 직접 만나자고 졸랐다. 하영이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연인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된 하영이는 남성에게 몸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영이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너가 보낸 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릴 거야."라고 협박하며, A가 만나는 걸 거절할 때마다 더 많은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협박 속에 남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하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7) "너 사진 합성할거야"

"나 여자야, 너랑 동갑이고." 미영이는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나이와 성별이 같아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미영이에게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미영이는 의심없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너가 보내 준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이랑 합성해서 인터넷에 퍼뜨릴 거야. 이거 막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합성되어 퍼뜨려질 것에 불안해진 미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3. 사진유포협박을 통한 성매매알선 강요 사례

17살인 가영이는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한 남성A가 가영이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냈다. 그것이 무엇이냐며 시작된 대화는 라인으로 옮겨 계속되었다. 가영이는 사진 속의 이상한 도구가 성적 행위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남성A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남성A와 밤새도록 대화를 하던 중, 남성A는 갑자기 너는 성적으로 무슨 성향이냐고 물었다. 당황한 가영이는 "나는 아직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남성A는 "요즘은 초등학생도 자기의 성향을 다 안다."며 가영이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보내기를 거절한 가영이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너와 대화를 나누는 나를 못 믿는 거냐.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얼굴만 빼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 내 사진도 보낼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너도 내 사진을 갖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 너무나 네가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차단을 하겠다."는 등 갖은 감언이설로 사진 보낼 것을 강권하였다. 가영이는 대화가 중단될 것이 아쉽기도 하고, 긴 시간동안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준 남성A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얼굴만 보내지 않으면 별일 없지 않을까 싶어 자신의 몸사진을 보내주었다. 남성A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였다. “사진을 라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 부모나 학교에 알릴 테니 나를 한번만 만나 달라, 우리가 만나면 보는 앞에서 지워주겠다.” 며 협박하여 1회 남성A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성폭행 당하였다. 그러나 가영이는 신고할 수 없었고, 남성A는 다시 지속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노예주인’ 관계로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진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영이는 남성A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성폭행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 늦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에게 엄마의 야단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그때마다 남성A는 가영이를 위로해주었고 가출을 권유하였다. 결국 가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성공해 엄마를 만나라는 유혹에 넘어가 재워줄 수 있다는 남성A의 말을 믿고 가출하였다. 가출한 후 가영이는 남성A의 집에 철저하게 고립, 감금되어 지속적인 성매수알선 강요 및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남성A는 생활비와 월세를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알선・강요하였고, 미성년자인 가영이가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통장에 성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가영이는 성매매 상황에서 성매수 남성B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신고할 수 없었던 가영이가 도움을 요청한 알선자 남성A와 성매수 남성B 간의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 되면서 가영이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장에 출두한 경찰은 가영이와 남성A가 짜고 성매수 남성B에게 ‘조건사기’를 쳤다고 의심, 경찰서로 이동 중 가영이는 남성A와 분리되지 못했다. 이에 남성A는 가영이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성매매는 가영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협박하였다.

Ⅲ.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범죄의 특징

1.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성착취 범죄는 90% 이상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자발적이라고 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의 경우 강요, 강제가 없다고 전제하여, 자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이트나 채팅 어플, 개인TV방송, SNS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제는 성매매의 모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알선업자들이나 또래 포주들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인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는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2.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착취 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도움받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해바라기센터, 경・검찰의 여성청소년과 등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단속과정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자발적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후견인에 의해 법적 권리가 행사되고 보호된다.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에게, 학교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는 협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보통 어떤 범죄적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알선업자나 성매수자와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성병이나 임신 등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더욱이 혼자서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을 찾아 갔을 때 생기는 2차 피해(낙인, 비난 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출을 선택하거나 알선업자, 성매수자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알선업자나 성매수자들은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4. 그루밍 수법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방법은 친근한 말투, 칭찬하기, 선물사주기, 용돈주기, 밥 같이 먹기, 영화 같이 보기, 나쁜 짓 허용하기, 놀러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길들여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악한 후 범죄에 이용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연인관계로 착각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단속에 걸려서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매수 범죄자들이나 알선업자들은 초기 길들이는 과정에서의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을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연인관계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5. 심각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라고 불리는 성장기여서 흔히 불안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다. 즉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멋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결과나 미래를 예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시기를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성매수자들과의 성적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잦은 자살시도,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특히 돈을 받으면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행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인지하거나 폭력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등 이후 정상적인 관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6. 성범죄자들에게 안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융합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고 있는 성착취 범죄수법

완전한 익명성과 대화내용의 휘발성, 짧은 기록저장 기간 등 성매수자의 성착취 범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무작위 단속의 위험성을 늘 의식하면서 성을 구매해야 하는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알선업자/성매수자들에게는 너무나 안전하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수 범죄는 특성상 미성년자가 다수 이용하는 채널로써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매수자들은 성인들에 비해 직업적이지 않은 소녀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소녀들은 협박에 취약하고 결코 혼자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Ⅳ. 「아청법」 개정 이후 나아갈 방향

1. 현재 협소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정의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 ▷소비에 더하여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범죄로 한정시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오프라인 세계 즉,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인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발현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킨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현실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분절적인 시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현실세계에 확장되어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행위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정의하여야 한다.

2. 디지털매체를 사용한 성착취 범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볼 때, 각 과정별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피해지원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범죄의 진화과정은 곧 피해의 심화과정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디지털매체를 사용한 성착취 범죄의 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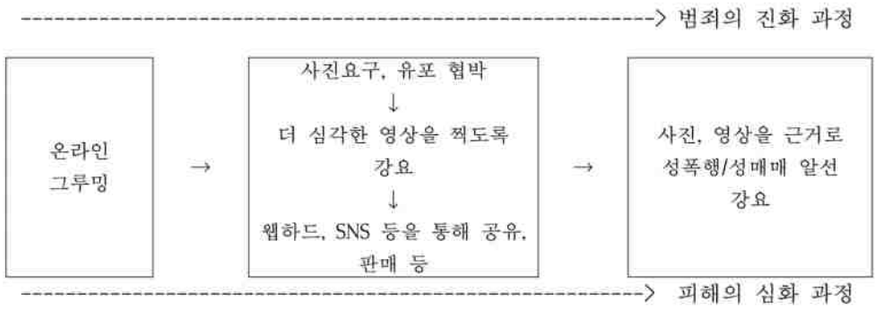

[그림1] 디지털매체를 사용한 성착취 범죄의 진화 과정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동일 선상에서 심화 발전되는 범죄이다. [그림1]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는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이때 성매매와 성폭력은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폭력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을 당하기도 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1차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조종하는 범죄로써 폭력이나 감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들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가장 심각한 폭력단계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낙인찍어 고립시켰으며, 처벌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어 피해회복이나 자활, 자립 등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었다. 이것은 결국 가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한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아청법」 개정이후 설치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그루밍→사진요구, 유포 협박→더 심각한 영상을 찍도록 강요→웹하드, SNS 등을 통해 공유, 판매 등→사진, 영상을 근거로 성폭행/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일련의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매는 90% 이상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매피해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 심화과정의 맨 마지막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현재 존재하는 지원체계 안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성매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설치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사이버또래상담을 탑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전 과정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와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4. IT 기술개발의 진보에 따른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상 성착취 채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5. IT 기술 개발을 통해 상업적 성착취 시스템을 감시하고 조기에 발견, 피해지원,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6.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을 범죄 피해자로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지원하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동청소년이 그 존재 자체로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성착취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성착취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성폭력과 성매매를 분리시켜 여전히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개정 아청법의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여 자발이라 판단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여 왔던「아청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2020년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이라도 사문화될 것이다. 개정된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2020년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https://teen-it.kr/for-tee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N%EB%B2%88%EB%B0%A9_%EC%82%AC%EA%B1%B4

조진경. 2020.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젠더리뷰』, 가을호(58): 4-16.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for Children and Youth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Cho, Jin Kyeong*

【Abstract】

In the early morning of April 30, 2020, the revised bill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Youth」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November 20, 2020.

The core of the amendment i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attracted to prostitution are classified into ‘voluntary’ or ‘compulsory’ and classified as victims and targeted youths and it is now decided to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victim children and youth.

This paper explained that the incessa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n were eventually led to the amendment of the Act. In the process, there were the efforts of the related on-site organization to amend the law.

In the main part, it is examined how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currently being sexually exploited through various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Key terms: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victim youth, targeted youth, victim children and youth, sexual exploitation

*CEO,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